

## 다문화사회와 지역다문화교육의 방향

염 미 경\*

이 글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상황을 살펴보고 그것이 지역사회와 정체성에 갖는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지역다문화교육의 방향을 모색해보려는 시론적 글이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문화 개념과 그 한계를 고찰하고 전통적인 문화 개념을 넘어서 성립된 다문화주의 구상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 혹은 다문화주의 담론의 전개과정을 알아보았다. 우리 사회는 외국계주민을 포함하여 소수자집단이 정체성모델보다는 동화모델을 추구하고, 문화적 정체성보다는 인권이나 시민권, 평등한 경제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주의 담론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동화주의가 아닌 다문화주의라고 한다면, 이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 논의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실험과 실천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 단위의 다문화 주체들의 자유와 권리를 전유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아래로부터의 진정한 다문화주의 관련 논의의 활성화와 이에 기반한 지역다문화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주제어: 다문화사회, 다문화공간, 다문화주의, 지역다문화교육

### I. 서 론

우리사회에서는 장기거주 외국인의 수적 증가라는 인구학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가 곧 다문화사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들의 유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다종족(multi-ethnic)·다민족(multi-national)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의 증가<sup>1)</sup>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교육 및 사회적 통합대책의 필요성을 사회 전면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email: mgyeum@ejunu.ac.kr)

◎ 접수일(2011년 2월 24일), 수정일(1차:2011년 4월 8일), 게재확정일(2011년 4월 21일)

1) 1960년대부터 지속된 가족계획과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적령기 여성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우리의 상황, 게다가 교육수준이 높은 한국여성들이 농어촌에서 생활하기를 거려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존재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들의 존재와 더불어 가족과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 다양한 장에서 민족국가를 넘어선 문화 주체들 사이의 일상적인 대면이 현실화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사회의 새로운 현상이다(염미경·김규리, 2008).

에 부각시켰다. 즉 최근 이주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권 간 접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 안에서 다인종·다문화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나라에서 1995년 27만 명에 불과하던 체류외국인 수는 2007년 8월 24일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해 1,000,254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다. 2010년 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계주민<sup>2)</sup>은 1,139,283명으로 주민등록인구(49,773,145명)의 2.3%로 집계되었다. 외국계주민을 유형별로 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920,887명(80.8%), 한국국적 취득자는 96,461명(8.5%), 외국계주민자녀는 121,935명(10.7%)이었고, 국적별로는 한국계중국인을 포함한 중국국적자가 636,507명으로 절반이상(55.9%)을 차지하고 이어 동남아시아(21.8%), 미국(5.6%), 남부아시아(3.8%), 일본(2.2%), 대만(2.1%) 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29.7%), 서울(29.5%), 인천(5.6%) 등 수도권에 64.8%가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0).

2009년 말 현재 제주도 이민자는 42개국 7,343명<sup>3)</sup>으로 주민등록인구(562,663명)의 1.3%를 차지했다. 제주도 이민자의 국적별 이민자 현황을 보면, 중국국적자(조선족 포함)가 3,096명으로 전체 이민자의 42.2%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이 1,076명으로 전체 이민자의 14.7%, 필리핀이 507명으로 전체 이민자의 6.9%, 미국 448명으로 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주 현황을 보면 제주시에 5,195명으로 70.9%, 서귀포시에 2,148명으로 29.3%가 거주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는데, 전체 이민자 중 외국인노동자는 2,240명(전체 외국계주민의 32.2%)이며 결혼이민자는 15.8%(1,100명),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족자녀<sup>4)</sup>는 17%(1,180명)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2,522명), 베트남(608명), 미국(408명), 인도네시아(402명) 순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2010).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문화 개념과 그 한계를 고찰하고, 전통적인 문화 개념의 한계를 넘어서서 성립된 다문화주의 구상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우리나라의 다문화 현상의 전개과정에서 성립된 다문화주의 개념의 형성과 그것의 한계에 주목하며, 특히 지역사

2) 혼인이나 기타 이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합법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 유학, 결혼 등의 이유로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종전에는 ‘이민자’ 혹은 ‘이주민’이라고 하였으나 2008년 5월 이후부터 ‘외국계주민’ 혹은 ‘외국인주민’으로 칭해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계주민의 범주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 그 자녀,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이혼 뒤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의 자녀도 외국계 주민에 포함시켰다. 이 글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민자’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통계나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에 충실히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3) 이 가운데 외국인노동자는 2,563명으로 전체 외국계주민의 34.9%, 결혼이민자는 1,164명으로 전체 외국계주민의 15.8%, 유학생은 857명으로 전체 외국계주민의 11.7%, 재외동포는 252명으로 전체 외국계주민의 3.4%, 기타는 666명으로 전체 외국계주민의 9.1%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계주민자녀는 1,290명으로 전체 외국계주민의 17.6%를 차지했다.

4) 다문화가족자녀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전체의 약 88%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국적법> 제2조 1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므로 <헌법> 31조에 의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그 외 외국인노동자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도 헌법 제6조 2항 및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UN, 1991)에 의거해 교육기본권을 가진다.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족 자녀는 2007년 394명, 2008년 734명이었는데, 2009년 1,180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회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이 지역사회와 정체성에 갖는 함의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이 글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다문화 현상<sup>5)</sup>을 다문화공간(multicultural space)<sup>6)</sup>의 등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sup>7)</sup>.

## II. 다문화주의의 성립과 개념적 구조

### 1. 성립배경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원주의에 근거를 두고 현실적으로는 한 민족국가(nation-state)<sup>8)</sup> 안에 서로 다른 인종, 문화공동체가 존재하는 현실을 의미한다. 미쉘(Mitchell)에 의하면, 원래 다문화주의 개념은 1970년대 다문화주의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운 이민의 국가 캐나다에서 처음 등장하였다(Mitchell, 2003). 그 후 이민자의 증가라는 공통된 현안에 부딪힌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이를 수용하였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대표적으로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인 국가통치이념으로 확립하였다(오경석, 2007). 이들 나라에서 다문화주의는 급증하는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정치적,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낸 실질적인 사회변동의 촉매제였다(신성희, 2009; 정현주, 2010).

다문화주의는 먼저 서구사회가 다양한 관점과 인종, 언어, 종교, 계급·계층, 젠더, 이데올로기, 민족성, 국가 등의 요소에 있어서의 현저한 문화적 차이를 가진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기술적 차원을 넘어서서 다문화주의가 비교적 새로운 현상으로 부각된 것은 그것이 하나의 강력한 규범적 성격을 가지는 윤리·정치적 원리로서 제시된 데 있다. 즉 다문화주의는 정치

5) 외국인 이주자들이 도시·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 주목한 연구들은 우리사회에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국가별로 자생적인 외국인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지역의 사회와 공간이 원주민과 이민자로 이원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서래마을(프랑스인 마을, 서울 반포4동)’, ‘리틀도쿄(일본인 마을, 서울 동부이촌동)’, 서울 이태원과 해방촌의 아프리카인 거주 지역, ‘화교마을(차이나타운)’ 등이 생성되어 공동체 활동을 전개해왔고, 동대문시장 근처(러시아·중앙아시아·몽골인)나 대학로(필리핀인)처럼 특정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이 자주 모이는 지역도 생겨났다. 이와 맞물려 외국인을 위한 안정적 정착 지원, 지역사회 통합, 다문화주의에 대한 시민이해 확대, 외국문화자원의 활용, 관광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정책 과제들이 수행되었다(신성희, 2009). 이같은 흐름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초국적(超國籍) 이주사회가 지역 내에 형성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추동하는 변화들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과 대비가 필요하다.

6) 다문화공간이라는 개념은 국가경계를 넘어 고향과 정착지를 연결하면서 양쪽 로컬을 바탕으로 이민자와 정착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 빛어지는 융합적, 혼종적 문화와 환경이 형성되는 과정 자체에 주목한다(신성희, 2009: 18). 다문화공간 개념은 첫째, 지구적·지방적 차원에서 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문화적 교류 및 혼재와 관련된 사회·공간적 현상들을 담지하고 이에 관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되며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인정을 전제로 한 규범적 윤리와 민주적 정치의 이상을 합의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사용될 수 있다(최병우, 2009). 이 글도 기본적으로 다문화공간이라는 틀로 지역사회의 다문화현상을 바라보려는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7) 이 글의 수정본은 김민호 외(2011)에 수록되었음을 밝혀둔다.

8) 정치공동체로서의 시민과 협통과 이에 기초한 문화·역사공동체로서의 민족의 관계에 따라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로 번역할 수 있다.

원리 또는 정책의 구상이 다양한 문화집단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행정과 법, 교육과 고용, 가족, 이민 등 모든 사회문제에 관련된 정부정책의 기본목표로서 문화적 다양성의 추구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주장을 내포한다(김비환, 1996).

오늘날 전 지구적 현상이 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유럽국가(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처럼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졌던 전통적인 국민국가들이 식민지 경영과 산업화 과정에서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를 겪게 되고, 그 결과 이주노동자와 낯선 문화 그리고 새로운 종교의 유입과 함께 다문화사회의 도전에 직면한 경우다. 둘째는 국가의 출범 초기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이민자의 나라였던 캐나다, 미국 등의 경우로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다문화사회의 도전에 익숙하지만 여전히 이들 나라에서 사회통합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단일 문화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에는 첫 번째 유형에 가깝지만 최근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변화에 따라 점점 다양하게 분화되는 인종과 문화, 지역과 종교 등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최성환, 2008).

어쨌든 최근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여 많은 이들은 다문화주의가 이러한 변화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해주리라는 기대를 가진다. 다문화주의라는 슬로건은 그 자체로 매우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의 실제적인 적용과 실현의 측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초기에 다문화주의는 정치적으로 배제와 동화에 대한 도덕적·사회적·정치적 저항, 사회적으로 세계화가 초래한 새로운 갈등의 해소를 위한 대안, 인식론적으로는 근대의 획일성에 대한 비판이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규범적 당위성을 부여받았다. 반면 오늘날 다문화주의는 집단 이기주의와 학문적 유행의 결합으로까지 간주되고 있다. 문제는 다양한 문화와 집단의 평화적인 공존의 필요성은 인정 하지만 다문화주의가 이러한 다문화 공존의 틀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원칙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다문화주의의 등장을 개인주의의 극복과 공동체의 복원으로 환영했던 시민적 공화주의(civic republicanism) 또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sup>9)</sup>자들은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의 추락이라는 점에서 다문화주의를 비판하고 있고,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다문화주의를 지지했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다문화주의가 부의 재분배라는 보다 본질적인 정치·사회적 과제를 도와시한 채 문화라는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안정에만 주력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곽준혁, 2007b). 다문화주의를 표방했던 대표적인 국가인 호주가 최근 그 정책의 공식 폐기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선회의 배경에는 최근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인종 갈등의 문제가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다문화주의가 더 이상 사회통합의 원리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상길·안지현, 2007). 따라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접근에서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며, 그런 배경에서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그 구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9) 이러한 입장에서는 대체로 공적 영역에서 동료 시민들과 함께 심의하고 행위 하는 가운데 인간의 진정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며,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의와 심의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민주적 권리의 보장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곽준혁(2007a)을 참조 바란다.

## 2. 개념적 구조와 한계

대체로 서구를 중심으로 통용되고 있는 단일문화로서의 전통적 문화 개념은 18세기 말 독일의 철학자 헤르더(Herder, 1989: 1744-1803)에 의해 정식화된다. 헤르더의 문화 개념은 오늘날까지 줄기차게 강조해온 단일민족(문화)이라는 관념에 매우 근접하는 것이다.

단일문화로서의 전통적 문화 개념의 구상은 크게 사회적인 동질화, 인종적인 기반 그리고 상호문화적 경계 설정이다. 먼저, 이 구상은 하나의 문화는 연관된 민족의 삶을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영향을 끼쳐야 하고, 모든 행위와 모든 대상을 바로 ‘이’ 문화의 혼동할 수 없는 구성 요소로 만들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 구상은 문화는 항상 한 민족의 문화여야만 하는데, 문화는 한 민족의 현존의 ‘정수’를 나타낸다고 본다. 또한 이 구상은 한 민족의 문화로서 각각의 문화는 다른 민족들의 문화로부터 특수하게 구별되고 경계를 설정해야만 한다(Herder, 1989; 최성환, 2008).

이와 관련해서 민족국가에 있어서 문화가 차지하는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민족국가의 형성과정은 단순히 통치의 확립과 제도적 통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영토 내에 거주하는 이들이 ‘민족’을 발견하고 본래 주권을 가진 정치공동체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공동체의 성원으로, 공동체 내에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 존재로 규정하고 공동체의 다른 성원들과 동료로서의 연대감 내지 민족정체성을 형성,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이 진전될 수 있었던 데에는 해당 공동체의 성원들이 외부와는 구분되는 ‘특정한 자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신념을 형성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의 틀이 무엇보다 주효했다.

이러한 점에서 민족국가의 요체인 민족의식은 정치공동체의 의도적 산물이라기보다는 문화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을 통해 ‘민족’을 상상할 수 있게 한 역사적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Anderson, 1991). 여기에는 언어와 교육제도는 물론이고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민족을 표상하는 각종 상징물 - 국기, 국가, 선언문 등 - 상징의 의미를 형성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공공의례 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생산되고 강조되는 민족과 그 기반이 되는 민족문화의 요체는 고유성과 단일성, 지속성에 있다(김이선, 2010).

이처럼 다양한 장치의 보호 하에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던 민족의 절대성과 민족문화의 단일성에 대한 신념은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국경을 넘은 인간과 자본, 상품, 문화, 정보의 이동이 본격화되면서 단일성으로 포섭되기 힘든 국가 내부의 차이와 다양성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전면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김이선, 2010). 현대사회는 통일성이 더 이상 기초적이지 않고 결코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다양화되었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문화개념의 요소들은 모두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다문화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이상적인 의미에서 다문화주의는 문화가 특정한 집단의 고정된 속성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집단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생겨난 산물로 이해되지만, 융합적 특성, 개방성 그리고 비결정성 등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다문화주의는 이념을 넘어 실제적인 정착에서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벨쉬(W. Welsch)는 다문화주의가 상이한 문화들을 계속해서 독립적인 그 자체로 동질적인 형성체로서 이해함으로써 개념적으로 여전히 단일문화라는 관습적인 문화이해의 계열에 놓여 있다고 본다. 다

문화주의의 구상은 하나의 그리고 동일한 사회 안에서의 상이한 문화의 공존에 대한 물을 제기하지만 이 구상은 한 사회 내부에서의 이러한 문화적 복수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다문화주의 구상이 여전히 예전의 동질화하는 문화개념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최성환, 2008).

다시 말해 다문화주의의 구상이 그 긍정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개념적으로 여전히 전통적인 문화 개념의 전제들, 즉 일정한 종류의 문화체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전제에 동의하는 한 그러한 종류의 문화들 사이의 갈등은 해결될 수 없다. 바로 그러한 전제들로부터 갈등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문화의 공존과 협력이라는 문제는 적어도 다문화주의가 단일문화라는 전통적 문화 개념의 전제들을 내세우는 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 다문화주의가 이론적 근거로 내세우는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sup>10)</sup> 관점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단순히 상호 문화 존중에만 주목한다면 상대주의의 굴레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문화 사이의 우열을 거부하는 입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극단적 상대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문화의 위상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보편적 가치의 설정이 적어도 하나의 규제적 이념으로서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김육동, 1998).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융합적 다문화주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문화의 인정을 넘어서서 실제로 이런 문화들이 문화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삶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구성원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화는 그 본래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화의 진정한 가치는 문화가 인간의 정신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창조해내는 가운데 형성되기 때문이다<sup>11)</sup>(최성환, 2008).

이상의 논의를 전제로 하여, 다음에서는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문화주의는 정치철학이나 정부의 정책이나 혹은 사회운동이나에 따라 달리 접근되고 있으며, 또한 주체 설정과 문화에 대한 이해, 적용범위와 방식에 따라 상이한 내용을 담게 된다(김영옥, 2007). 대체로 차별이나 불평등을 시정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는데, 이러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1970년대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전형적인 다민족국가들에서 활발히 논의된 다문화주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측면을 강조하는데, ‘동일한 국적, 단일한 국민정체성, 배타적인 시민권, 영토 내부에 대한 포괄적인 통치권’으로 설명되는 근대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비국적자,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성원권(post-national membership)을 규정하려는 시도이다. 이와 관련해 프레이저(Fraser, 2005)는 지구화시대에는 상호작용의 범위가 국민국가

10) 많은 인류학자들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상대주의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화상대주의란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신념 따위를 그들의 전통과 경험의 맥락에서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문화전통에서 옳은 것이 다른 문화에서 옳을 수도 그릇된 것일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노길명 외, 2002: 88).

11)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성환(2008)은 다양한 문화의 상호병존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서 정신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문화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병존적인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화 작용의 틀이 요구되는데, 이를 융합적 다문화주의 혹은 초문화주의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성환(2008)을 참조 바란다.

를 넘어서기 때문에 전 지구적 차원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고려하는 성원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정치적 차원의 활동을 시민권 정치라고 하기도 한다(손철성, 2008).

둘째는 경제적 차원에서 위계를 설명하는 재분배(redistribution)의 관점에서 차별과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다문화주의 입장이다. 여기서 차별이나 정의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재화의 분배 또는 재분배 문제와 관련되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에 동등한 참여를 가로막는 경제적 자원의 불균등 분배나 경제적 차별의 문제를 다룬다. 재분배 관점의 다문화주의 옹호자들은 주류 제도가 다수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편향적이며 이러한 편향의 결과로 소수자들의 행위와 정체성에 해를 입힌다는 주장에서 출발하며 경제적 위계구조에 내재하는 불평등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 노동분업의 재편성, 투자결정의 규제 등 경제적 재구조화가 요청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정책의 대상은 시장이나 생산수단과의 특수한 관계에 의해 경제적으로 결정되는 계급 혹은 계급과 유사한 집단들이며 그 목표는 기회와 문화에 있어 집단 간에 존재하는 계급적 차이를 축소하는 것이다(김영옥, 2007; 손철성, 2008).

셋째는 문화적 차원으로, 신분적 위계구조에 내재하는 불평등을 제거하려고 하는 인정(recognition)의 정치를 강조하는 다문화주의 관점이다. 여기서 차별이나 정의의 문제는 주로 문화적 정체성이나 문화적 권리와 관련된다. 즉 인정의 정치라는 관점에서는 표현, 해석, 의사소통의 사회적 양식에 뿐만 아니라 문화적 부정의에 초점을 맞추는데 문화적 지배, 인정하지 않음, 경멸 등이 이러한 부정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에 동등한 참여를 가로막는 문화적 차별이나 문화적 정체성의 불인정 문제를 다룬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천하게 여겨진 집단의 손상된 정체성과 문화적 산물들을 상향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문화적 다양성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생산하는 재현, 해석, 소통 등 상징적 체계의 사회적 패턴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서구 국가들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슬람교도보다는 기독교도가, 흑인보다 백인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동성애자보다는 이성애자가 신분적으로 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하층집단은 신분적, 문화적으로 차별을 받는데, 대중매체나 학교교육 등에서 무시나 경멸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정의 정치에서는 이러한 신분적 위계구조나 문화적 차별을 타파하는 투쟁에 초점을 맞추어 소수자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적 권리의 인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나 소수자들의 조직적 활동, 차별화된 시민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손철성, 2008).

이상의 차별이나 정의와 관련된 세 가지 차원의 정치는 상호작용을 하면서도 각각 자율성을 지닌 영역이다. 예를 들어 계급, 젠더, 인종 등 3개의 유형을 살펴보면 이 중에서 계급은 비교적 가장 재분배에, 젠더와 인종은 재분배와 인정의 차원 모두에 유사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적 차별이나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차원에서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처럼 다문화주의 담론은 다양한 문제들이 얹혀있는 주제이다. 이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개념이 원주민이나 케벡인과 같이 인종, 민족, 종교 등에서 다수자 집단과 차이가 있는 문화적 소수집단이 존재해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 캐나다에서 처음 사용된 것과 관련이 있다<sup>12)</sup>. 대체로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대립과 갈등이 존재해 소수자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등장한 다문화주의 개념은 그 영역을 확장하여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주의가 소수자들에 대한 문화적 차별을 제거하고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적 권리 를 인정하는 데 기본 이념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손철성, 2008).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또는 다문화주의 담론이 확산되면서 문화적 소수자 집단이 문화적 다수자 집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기준으로 한 다문화 모델의 유형을 살펴보자 한다. 여기에는 동화모델과 정체성 모델이 있는데, 동화모델은 소수자집단이 다수자집단의 문화에 동화되거나 통합되기를 원하는 경우이며<sup>13)</sup>, 정체성 모델은 소수자집단이 다수자집단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sup>14)</sup>이다(손철성, 2008). 다문화주의 관점에서는 정체성 모델에 관심을 둔다.

이와 유사하게 설동훈(2005)은 다문화 모델을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세분화한다(설동훈, 2005). 문화적 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개념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문화적 다원주의가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류사회가 존재함을 분명히 하고 여러 다양한 소수민족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다문화 모델이라면, 거기서 보다 발달된 개념인 다문화주의는 주류사회의 중요성을 부각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처럼 다문화주의는 종족집단(ethnic groups)이 갖고 있는 문화적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전체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다문화 공존을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민족마다 다른 다양한 문화나 언어를 하나로 동화시키지 않고 공존시켜 서로 승인,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복수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수민족과 이민자의 고유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다문화주의가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sup>15)</sup>.

### III.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주의

‘단일민족’으로서 하나의 언어, 문화 그리고 전통을 유지해왔다고 여기는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

12) 우리 학계에서 다문화주의 담론은 1990년대 초반에 문학비평의 한 영역으로 처음 소개되었고, 1990년대 후반에는 정치철학적인 관점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접근들이 시도된 바 있다(오경석, 2007: 36).

13) 이 경우 이민자들의 주요 관심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보다는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인해서 시민권이나 경제적 권리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것에 둔다.

14) 예를 들면, 캐나다의 원주민이나 퀘벡인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가톨릭을 믿는 프랑스계 퀘벡인들은 주류인 영국 문화에 통합되는 것을 거부하고 프랑스어를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공동체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퀘벡 인들은 주류 집단의 시민들에 비해 시민권이나 경제적 권리에서 특별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자적인 문화 공동체의 존속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손철성, 2008).

1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동훈(2005)을 참조 바란다. 김은미·김지현(2008)도 특정 사회에서 외국인의 정착을 받아들이는 정책에서 바람직한 유형이 다문화 모델이라고 지적한다(김은미·김지현, 2008: 9).

상 하나의 민족, 인종,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새터민 등과 같이 다양한 배경을 지니고 살아왔던 이민자들과의 공존은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공존 시대를 열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와 인종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한 사회나 국가에 공존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 다문화주의이다.

우리사회에서는 다문화주의 개념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와 해석이 존재하고 있어 쉽게 정의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다문화라는 개념은 사회·문화의 내재적 변화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외국인이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며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는 객관적 현상을 지칭하는 다인종·다민족 사회 개념과 구분해 사용하기도 한다(김은미·김지현, 2008). 이는 한국에서 외국인의 증가라는 객관적인 현상은 ‘다인종·다민족 사회’의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에 따라 여러 나라로부터 유입된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이며 상호존중적인 정책이나 태도, 문화로 변화할 때 ‘다문화’라고 지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사회 혹은 다문화주의 논의를 통해 소수민족, 인종,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킨 점은 일단 긍정적이다(박홍순, 2007).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들은 2005년 5월, 외국인 문제의 위상이 ‘대통령 지시과제’로 격상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해, 2006년 4월 국정회의에서 ‘다인종·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정부의 각 부처는 ‘이주자를 통합하려는 다문화주의 정책’ 개발과 입안을 위한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처럼 ‘다문화·다종족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문제의식이 공식적으로 선언되면서 <혼혈인 및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과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안>의 정책이 부처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오게 된다. 2008년 3월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sup>16)</sup>이 제정되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근거 법도 마련되게 되었으며, 기능이 조정된 보건복지가족부에 다문화가족과가 신설되어 결혼이주 여성에 대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정책 및 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다(이혜경, 2009). 2006년에는 ‘다문화 열린사회’와 ‘사단법인 국경 없는 마을’ 등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비정부 단체(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 혹은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담론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정부나 교육계에서도 ‘다문화’ 정책이나 ‘다문화’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다문화 혹은 다문화주의 담론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다음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6년 정부는 한국사회의 ‘다문화·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문제의식을 급작스레 선언하는 방식으로 소위 ‘관주도형 다문화주의’<sup>17)</sup>를 이민자정책 담론의 새로운 키

16) 2008년 3월 21일 제정되어 9월 22일부터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자녀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이주의 전 단계와 과정에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결혼이민자 본인에게 치중되어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정책이 미흡하다는 점과 초기 적용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 일부 사업에 집중되어 지역별, 출신국가별 다양한 욕구 반영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이를 수정, 보완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국제결혼에 의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법’일 뿐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워드로 부상시킨다. 이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통해 단기적인 방문노동의 문제를 이민(정주)의 문제로, 노동력 관리의 문제를 사회·문화 통합의 문제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및 시민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타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정부<sup>18)</sup>가 문화적 권리와 관련해서만 적극적으로 개방적 입장을 취하게 된다. 더욱이 정부가 고려하는 다문화 정책의 대상 범주는 외국계주민 중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이었다.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서 국내 이민자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범주적으로 배제시켜 버린 것이다(오경석, 2007).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은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말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에 따르면 ‘한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이나 이미 귀화허가를 받은 내국인과 한국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의 범주는 결혼이민자 가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주노동자 범주는 배제되었다<sup>19)</sup>. 즉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주로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은 가부장적이며 순혈주의적인 한국사회 및 문화에 일방적으로 적응 내지 통합되어야 할 대상이지 결코 다문화사회의 대응한 주체로 평가되지 않는 기본적으로 순혈주의에 근거한 동화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김희정, 2007; 정혜실, 2007). 최근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글교육, 문화적응교육, 전통예절교육, 요리교육, 송년한마당 행사, 가족한마당 페스티벌, 다문화교과서 개발, 교사 대상 다문화교육 실시 등 수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다문화정책이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적용과 동화의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sup>20)</sup> 문화적 다양성이나 문화적 정체성의 관점과는 거리가 있다. 이 점은 우리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 통합보다는 인구대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기도 한다.

결국 정부의 다문화주의 이민자 정책은 ‘다문화주의’라는 포용적인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전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더욱이 정부의 다

- 
- 17) 다문화주의는 전 지구화로 인한 인구구성의 다양성에 대해 학자, 정부, 소수자들이 각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는데, 관주도형 다문화주의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는 다문화주의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관주도형 다문화주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경석(2007)과 김희정(2007)을 참조 바란다.
  - 18) 정부는 15년 이상 ‘산업연수제’라는 이주노동 ‘불허’ 정책을 고수했으며, ‘노동허가 불허’와 함께 ‘가족 동반 불허’라는 정책을 펴왔다. ‘고용허가’라는 제한적인 방문노동 허가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2007년부터로, 우리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일관되게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체류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가족동반은 불허하는 단기 로테이션 정책을 고수해오고 있다.
  - 19) 예를 들어, 1997년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시민권자의 자격을 부여 받지 못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주요대상으로 삼는 다문화가족은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으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점이다(김영옥, 2007: 133-134).
  - 20) 한국정부가 실질적인 동화정책을 ‘다문화 정책’이라고 이름붙이는 이유로 김희정(2007)은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을 들고 있다. 국제적 요인으로는 정부가 다문화주의가 새로운 소수자 통합의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자를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통합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 해서이며, 국내적 요인으로는 초기 인권·노동권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던 이주노동자 지원세력이 최근에 세분화되면서 일부 단체들이 시민권 및 다문화 담론을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정부도 소수자문제를 다문화 문제로 규정하기 시작한 것임을 든다(김희정, 2007: 75-76).

문화 정책의 주요 대상인 결혼이민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다문화 모델 중에서 정체성 모델보다 동화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도 대체로 차별을 받지 않고 한국 사회에 통합되기를 원하며 문화적 정체성의 유지보다는 인권이나 경제적 권리에서 다른 한국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손철성, 2008). 실제 결혼이민자집단과 같은 소수집단들이 내적으로는 문화적 정체성의 유지나 강화를 바라지만 억압적인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sup>21)</sup>.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소수자집단의 문화적 차별과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주의의 담론은 일정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 IV. 결 론

소수문화 주체들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인정과 관용의 정도는 정부나 시민사회 두 차원 모두 매우 척박한 상황인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유일의 종족집단인 화교공동체는 철저하게 비시민권자로서의 삶을 강요받아야 했고 내국인 혼혈인들 역시 비시민권자로서의 삶을 강요받아왔기는 마찬가지다. 이제 다문화사회의 실질적인 주체들의 삶의 현장을 기반으로 그들의 주도로 전개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문화주의는 정부정책 및 그와 관련된 담론 생산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다문화 주체들을 중심으로 다문화주의가 새롭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다문화주의의 초점에서 문화도 중요하지만 이민자들의 생존에 맞춰져야 하는데, 언제 닥칠지 모르는 단속, 추방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문화적 공존이라는 슬로건은 공허할 따름이며, ‘공존’을 위해 문화에 앞서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삶의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자유이다(오경석, 2007).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동화주의가 아닌 다문화주의라고 한다면, 이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오랜 실험과 실천의 과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이민자들을 시민주체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재분배와 인정을 둘러싼 정의의 문제, 지구촌시대에 사회변동에 조응하는 시민권의 이해, 시민권으로서의 문화권<sup>22)</sup>과 젠더권의 문제 등이 보다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김영옥, 2007).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서 다문화 주체들이

21) 미국에서 소수집단이 사회적 편견, 종속, 공포 등의 이유로 집단의 차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웠던 풍토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월저(Walzer, 2004)는 소수집단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있어서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1940년대 뉴딜정책에 대한 유대인의 자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22) 다문화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문화권을 논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이 문화에 대한 이해임을 고려하면, 우선 문화는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창조적이고 변화하며, 혼종적이고 침투성이 강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관계성과 행위성, 권력이 작동되면서 정체성을 구성하는 장이라는 것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문화주의는 ‘주의’의 경직된 관리체계가 아닌 변화와 창의성을 지닌 변증법적 과정이 될 수 있다(김영옥, 140-141).

## 염미경

자유와 권리를 전유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아래로부터의 진정한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논의의 활성화와 구체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동시에 다문화를 수용하는 지역사회 수준의 변화와 이를 위한 문화수용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는 장소의 공유와 경험의 공유를 통해 자신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이미지와 정체성을 형성, 유지시킨다. 그동안 지배적이었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역과 우리의 일상적 생활에서의 지역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물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전지구화시대 다문화공간에서는 긴 전통과 역사에 기초한 확고하고 고정적인 단일의 지역정체성이 형성되기보다는 혼성문화, 혼성적이고 분산적인 정체성이 형성될 것이다(Hall, 1992). 따라서 우리는 세계성과 지역성 간의 새로운 접합 경향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사회론이 한국에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심층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사회적 합의 구축이 절실하며,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이나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우리의 현실에서 지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다문화 현실을 가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 수준의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 이때 다문화사회에 걸 맞는 지역정체성의 형성을 위한 지역화교육<sup>23)</sup>이 다시금 중요해진다.

한국인 대다수는 학업과 취업 등의 이유로 태어난 곳을 떠나 여러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더욱이 전지구화과정 속에서 한국인들이 한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주거지를 계속 바꾸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인들은 태어난 곳과 자라난 곳, 교육받은 곳, 취업한 곳, 결혼하여 사는 곳, 은퇴하여 사는 곳이 모두 다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역정체성은 하나의 단일한 개념으로 확고하고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확고한 개념으로서의 지역정체성은 전지구화와 지방화시대의 다문화공간에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김준, 2002; 이윤희, 2002; 추명희, 2002; 홍석준, 2003)이 지역정체성은 고유하고 특수한 문화적 전통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지방화의 흐름 속에서 지방이 중앙과 그리고 다른 지방과 차별성을 가지기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하였다. 정치적으로 항상 거론되는 지역성, 지역구도, 지역정체성은 긴 전통과 역사에 기초한 확고하고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신화이며 이데올로기로서 한국 정치구도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지역정체성은 더 이상 고정적인 것 이 아니다.

전지구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정체성은 고정되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진행되고 있는 형성과정 속에 있고, 그 지역의 경제구조나 정치체계의 변동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하여 변화될 수도 있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현택수, 2001; 윤택림, 2008). 즉 지역의 정체성도 어떤 지역을 만들어갈 것인가, 주민들이 어떤 지역이길 원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와 접합되어 상황에 따라서 웅집되고 분산되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정체성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것으로 상황과 맥락

23) 지역화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염미경(2006)을 참조 바란다.

에 따라서 주민들이 동원할 수 있는 문화적 기제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윤택립, 2008).

이 글은 다문화사회가 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지역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려는 시론적 글이다. 앞으로 지역사회 수준의 다문화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와 지역적 특성을 살린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곽준혁(2007a). 비지배적 상호성: 고전적 공화주의의 현대적 재조명.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및 정책방향 모색. 공동포럼 자료집(1-17). 코리아연구원-코리아컨센서스 공동 주최.
- 곽준혁(2007b). 다문화 공존과 사회적 통합. 대한정치학보, 15(2), 23-41.
- 김민호 외(2011). 지역사회와 다문화교육. 서울: 학지사(근간).
- 김옥동(1998). 다문화주의의 도전과 응전. 미국학논집, 30(1), 29-49.
- 김은미·김지현(2008). 다인종·다민족사회의 형성과 사회조직: 서울의 외국인 마을 사례. 한국사회학, 42(2), 1-35.
- 김비환(1996). 포스트모던 시대에 있어 합리성, 다문화주의, 그리고 정치. 사회과학, 35(1), 205-236.
- 김비환(2007).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 통합: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 문제. 법철학 연구, 10(2), 317-348.
- 김준(2002). 지방자치와 지역정체서의 형성: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문화만들기. 경제와 사회, 53, 36-62.
- 김영옥(2007).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46(2), 129-159.
- 김이선(2010).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다문화’정책의 성격: 문화의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4(1) 167-192.
- 김희정(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아카데미.
- 노길명·정태환·김웅렬·서용석·현택수(2002). 문화인류학의 이해. 서울: 일신사.
- 라종일(1997). 세계시민 연구와 다문화주의적 정체. 유럽연구, 5(1), 281-299.
- 박채복(2008). 한국이주자 사회통합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46, 253-274.
- 박홍순(2007). 다문화와 새로운 정체성: 포스트콜로니얼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아카데미.
- 설동훈(2005). 이민과 다문화사회의 도래. 김영기 편. 한국사회론. 전주: 전북대학교 출판부.
- 손철성(2008).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철학연구, 107, 1-26.
- 신성희(2009). 인천시 다문화 분포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 아르준 아파듀라이·이브윈킨(2008). 지속가능한 다양성: 문화와 개발의 불가분성.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42-56.
- 염미경(2006). 지역화와 지역정체성, 그리고 지역화교육의 방향. 시민교육연구, 38(2), 101-136.
- 염미경·김규리(2008). 제주사회의 결혼이민자들: 선택과 딜레마, 그리고 적용. 서울: 도서출판 선인.

- 오경석(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 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아카데미.
- 윤택림(2008). 과천 신도시의 주민 되기. *지방사와 지방문화*, 11(2), 307-345.
- 이상길·안지현(2007). 다문화주의와 미디어/문화연구: 국내 연구동향의 검토와 새로운 전망의 모색. *한국 언론학보*, 51(6), 58-83.
- 이윤희(2002). 인천시민의 지역정체성에 대한 연구. *인천학연구*, 1, 9-32.
- 이혜경(2009).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5, 147-166.
- 정현주(2010). 대학로 리틀마닐라 읽기: 초국가적 공간의 성격 규명을 위한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295-314.
- 정혜실(2007).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국 여성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 제주평화연구원(2009). 평화산업과 제주의 미래. 제주: 제주평화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2007). 결혼이민자가족 생활실태 및 욕구 전수조사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지역혁신협의회 지역사회발전분과협의회(2009). 제주지역 다문화가정 정책추진체계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2010). 2010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결과(2010.2.1 - 3.31).
- 제주특별자치도(2010).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 최성환(2008).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전망. *철학탐구*, 24, 287-310.
- 추명희(2002). 역사적 인물을 이용한 지역의 상징성과 정체성 형성 전략: 영암 구립리의 도기문화마을 만들기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3), 326-346.
- 최병두(2009). 다문화공간과 지구-지방적 윤리: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공간에서 인정투쟁의 공간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635-654.
- 홍석준(2003). 지역축제를 통해 본 지역정치와 정체성: 전남 영암, 영보 풍향제의 사례. *지방사와 지방문화*, 6(2), 85-126.
- 행정안전부(2010).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보도자료 2010년 6월 11일자).
- 현택수(2001). 문화의 세계화 담론과 문화정체성. *문화정책논총*, 13, 1-26.
- Anderson, B.(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윤형숙 역(2002).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서울: 나남.
- Appadurai, A.(1996). Sovereignty without Territoriality: Notes for a Postnational Geography. In Yaeger, Patricia (Ed.). *The Geography of Identity*.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Castells, M.(1996). *The Information Age: Society and Culture: The Rise of Network Society*. Cambridge, MA; Oxford, UK: Blackwell Publishers, Inc.
- Fraser, N.(2005). Rethinking Justice in a Globalizing World. *New Left Review* 36, 1-19
- Harvey, D.(1978). The Urban Processes under Capitalism: A Framework for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 101-131.
- Hall, S.(1992). New Ethnicities, In A. Rattansi and J. Donald(Eds.). *Race, Culture and Difference*. London: Sage Publications.
- Robertson, P.(1992). *The New World Order*. Thomas Nelson.
- Walzer, M.(1997). *On Toleration: The Castle Lectures in Ethics, Politics, and Econom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송재우 역(2004). 관용에 대하여. 서울: 미토.

<Abstract>

## Direction of Community Multicultural Educa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Yeum, Mi-gyeung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tries to look at the change situation to multicultural society and gropes after the implication that has in a local community and identity. Traditional cultural idea and its limits were considered in this paper and the features of the multiculturalism plan concluded beyond a concept of traditional culture were checked. Subject to such argument,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multi cultures or the multiculturalism discourse of our society was checked in this paper. Minority groups included the foreign residents pursue an assimilation model more than an identity model, and they have a lot more interest in the human rights, the citizenship and an equal economic right in Korea. If the direction of our society would be the multiculturalism, the process of the experiment and the practice as well as theoretical argument to multiculturalism are needed to make this fixed in our society. In relation to this, true activation of multiculturalism related argument and community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from the bottom would have to be made with the local community standard. To this, it will be accentuated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infrastructure from which various cultures are received.

<Key words> Mulicultural society, Munticultural space, Multiculturalism, Community multicultural education



# 『교육과학연구』 투고 규정

##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규정 3조 8항에 따라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교육과학연구(구 교육과학연구 『백록논총』)의 간행과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간행횟수)

논문접수는 수시로 하며, 발간일은 5월 31일과 11월 30일이다.

## 제 3 조(논문 투고)

- ① 모든 투고 논문의 원고는 ‘한글’이나 MS워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투고 논문의 원고 작성형식 및 원고 여백은 교육과학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한 「교육과학연구」 원고 작성요령에 따른다.
- ③ 논문원고는 수시로 교육과학연구소로 인터넷 온라인으로 투고하거나, 전자우편으로 투고 한다.
- ④ 원고 제출시 외국어 초록 하단에 연락 주소와 전화번호를 명기하여 홈페이지(<http://www.eduscijejunu.com>) 또는 전자 메일로 제출한다.
- ⑤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저자(교신저자 포함)와 공동저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학술지에 저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별도로 적시된 사항이 없으면 가장 먼저 소개된 저자를 제1저자 및 교신저자로 한다.
- ⑥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는 「교육과학연구」 심사 규정에 따른다.
- ⑦ 「교육과학연구」의 언어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영문논문은 영문으로만 작성한다. 다만 혼동의 우려가 있는 용어는 팔호 내에 영어, 한자, 기타의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다.
- ⑧ 고유명사의 경우 해당 언어 발음을 한글로 적되, 일상화된 고유 명사는 예외로 한다. 한자문화권의 경우 고유명사는 한자로 표기 할 수 있다.

## 제 4 조(투고 내용)

- ① 투고 논문의 내용은 유·초·중등학교와 대학의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에 관련된 논문을 포함한다.
- ② 「교육과학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곳에 발표된 적이 없는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투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5 조(논문 작성)

- ① 논문은 이하에서 제시한 편집 기준에 따라 20면 이내로 작성하며 최대 25면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논문의 작성 순서, 초록, 주제어, 장절항목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 가. 논문 원고의 작성 순서는 논문제목, 저자 이름 및 소속 기관, 국문 초록, 주제어(국문), 본문 및 각주, 참고문헌, 영문초록, 주제어(영문), 저자의 전자우편 주소 및 전화 번호, 부록

으로 한다.

- 나. 초록은 100-200 단어 사이의 분량으로 하되, 본문이 국문인 경우 외국어로, 본문이 외국어인 경우 국문으로 한다.
- 다. 주제어의 개수는 3개 이상 6개 이하로 한다.

#### 제 6 조(논문 편집 기준)

논문 제목, 장절항목 제목의 번호 부여 및 글자 크기, 인용문, 표와 그림, 단위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논문 제목의 글자크기는 20 진하게, 각주 글자크기는 9로 작성한다.

② 장절항목 제목의 번호 부여 및 글자 크기

1단계 - I, II, III ... (15 진하게)

2단계 - 1, 2, 3 ... (13 진하게)

3단계 - 가, 나, 다 ... (11 진하게)

4단계 - (1), (2), (3) ... (10)

5단계 - (가), (나), (다) ... (10)

6단계 - ①, ②, ③ ... (10)

③ 인용문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각각 5글자씩 들여 쓰고, 줄 간격은 150으로 한다.

가.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 연도, 또는 발행 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1) 이 문제에 관하여 홍길동(2001)은...

(예 2) 홍길동(2001: 15)은...

나.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하 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 연도, 해당 면 등을 표시한다. 참고문헌이 여럿일 경우에는 문 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가른다.

(예 1)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홍길동, 2001: 18).

(예 2) 한 연구(Anderson, 1999; 홍길동, 2001)에 의하면...

다. 저자가 다수일 경우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하되, 4인 이상은 첫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이 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국문) 홍길동 외(2001)

(영문) Anderson et al.(2000)

④ 표와 그림

가. 표와 그림에는 일련 번호를 붙이되, 표에는 <>, 그림에는 [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하고, 표의 제목은 상단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에 제시한다. 표에서 세로선은 생략한다.

(예) <표 1>, [그림 1]

- 나. 표와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한다.
- ⑤ 단위 표시는 국제 표준(SI)인 미터법을 사용한다.
- ⑥ 기타 예시되지 않은 인용 및 주석 작성법은 최신 APA(미국심리학회) 방식을 따른다.

#### 제 7 조(참고문헌 작성)

- ① 국문 참고문헌 및 영문 참고문헌의 작성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② 논문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韓·中·日·西洋書 순으로 열거한다. 여기에 예시한 이외의 서양 참고문헌의 작성법은 APA 양식을 따른다.

  - 가. 단행본의 경우: 책 이름은 진하게 한다.  
홍길동(2001). 창의력. 서울: 공공출판사.
  - 홍길동·김기동(2001). 창의력과 평가. 서울: 공공출판사.
  - 나.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의 경우  
홍길동·김기동(2001). 열린교육 평가를 위한 연구. *교육학연구*, 39(2), 143-166.
  - 다. 학위논문의 경우  
홍길동(2000). 기독교 신앙 행동의 측정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 라. 편저 속의 논문의 경우  
이상호(1998). 아비튀스와 상징질서의 새로운 사회이론. 문화와 권력: 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 현택수(편), 121-161.
  - 마.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의 경우  
최상진(1999). 문화심리학: 그 당위성, 이론적 배경, 과제 및 전망. 한국심리학회 하계심포지움 문화와 심리학, 1-20. 8월 20일. 서울: 연세대학교 제 2인문관.
  - 바. 신문기사의 경우  
동아일보(2001.9.23). 사이버 대학 1학기 수강생 10명 중 8명 꿀 재등록. 19면.
  - 사. 전자 매체, URL 등 인터넷 간행물의 표기
    - ㉠ 인터넷에서 정보를 인출한 경우 자료 원천의 이름과(혹은) 주소를 적은 후 인출한 날짜의 연월일을 구분하여 적고 "...에서 인출"이라고 적어 문장을 끝낸다. 반드시, URL과 인출한 날짜를 기입한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August 1). APA style for electronic resources.  
<http://www.apastyle.org/styleelecref.html>에서 2001.9.5 인출.
    - ㉡ 인터넷의 비정기간행물 문서의 경우 날짜가 명기되지 않고 일반 기관에서 게시한 인터넷 문서가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었을 때는 그 문서가 들어간 홈페이지(혹은 첫 화면)로 연결될 수 있는 URL을 적어주고 작성 일자가 없음을 "작성일 불명"(영어는 no date를 나타내는 축약어 n.d.로 표기)이라고 명시한다. 문서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는 그 문서의 제목을 저작자명으로 간주하여 제시한다.  
GVU's 8th WWW user survey.(n.d.).  
[http://www.cc.gatech.edu/gvu/user\\_surveys/survey-1997-10](http://www.cc.gatech.edu/gvu/user_surveys/survey-1997-10)에서 2000.8.8 인출.

- ④ 기타(온라인 포럼, 토론 및 온라인상에서 읽은 일간지 기사 등)  
 이정모(2000.12.24). 과학도로서의 심리학도의 자세/신조. <http://www.koreanpsychology.org>  
 회원광장 사이버특강에서 2001.10.3 인출.  
 한국일보(2001.10.12). 생명의 비밀 상자-게놈. <http://www.hankooki.com>에서 2001.10.12  
 인출.

② 영문 참고문헌 작성 시 유의 사항

가. 책명은 이탤릭체로 할 것

McMillan, J.H.(2001). *Classroom assess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effective instruction (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나. 논문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쓸 것(단행본의 경우 도 동일). 단, 정기간행물의 명칭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할 것.

Brookhart, S.M., & Freeman, D.J.(1992). Characters of teacher candidat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2(3), 37-55.

Airasian, P.W.(1991). *Classroom assessment*. N. Y: McGraw-Hill.

Gold, N.C.(1981). *Meta-evaluation of selected bilingual education projec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다. 여러 사람이 쓴 글을 편집하여 펴낸 책에서 한 논문을 참고하였을 때는 아래의 방식을 따라 표기할 것.

Wells, A.S.(1996). African-American students' view of school choice. In Fuller, B., Elmore, R. & Orfield, G.(eds.), *Who chooses? Who loses? Culture, institutions, and the unequal effects of school choic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라. 번역서 혹은 편역서의 경우 원저자명 뒤에 본문에서 인용한 번역서의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번역서명을 적을 것. 원전의 제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대괄호를 이용하여 원전의 제목을 표기하고 이어서 괄호로 묶어 역자명을 적고 “역 혹은 편역”으로 번역서임을 표시하고 마침표를 할 것. 그리고 번역서의 출판지와 출판사를 적고, 그 뒤에 원전의 출판 연도를 괄호를 묶어 제시할 것. 그러나 본문에서는 괄호 안에 원저자명을 적고 원전의 출판연도와 번역서의 출판 연도를 빗금(/)으로 구분하여 나란히 표기할 것[예: Bowles, S. & H. Gintis(1976/1986)].

Bowles, S. & Gintis, H.(1986). *자본주의와 학교교육*[*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Educational reform and the contradictions of economic life*]. (이규환 역). 서울: 사계절. (원전은 1976에 출판)

③ 영문 외 참고문헌은 해당 국어와 영문을 병기한다. 한글 참고문헌도 아래와 같이 한글과 영문을 병기한다.

가. 단행본의 경우

오육환(2005). 교사전문성. 서울: 교육과학사.

(Translated in English) Oh, W.H.(2005). *Teacher professionalism*. Seoul: Educational Science.

나.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의 경우(반드시 해당 페이지를 밝힐 것)

김경근(2008). 한국사회의 대안교육 수요 결정요인. *한국교육학연구*, 14(1), 45-69.  
(Translated in English) Kim, K.K.(2008). Determinants of demand for alternative education in Korea.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4(1), 45-69.

다. 학위 논문의 경우

김정숙(2006). 여자 대학생의 직업인식과 직업선택 과정.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Translated in English) Kim, J.S.(2006). Occupational perceptions and choices of femal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라. 인터넷 자료를 인용한 경우

이종재(2003). 교육행정시스템 혁신의 방향. <http://www.kedi.re.kr>에서 2003. 08. 26 인출.  
(Translated in English) Lee, C.J.(2003). Directions of innovation 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Retrieved August 26, 2003, from <http://www.kedi.re.kr>

마. 신문기사 자료

○○신문(2008. 10. 22). ‘학생 자살’ 예방교육 실시. 4면.  
(Translated in English) Teachers advised on teen suicide(October 22, 2008). ○○ Newspaper, P. 4.

④ 영어논문 작성 양식

영어논문의 작성 양식은 the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the 5th edition)에 따른다. 논문 분량은 A4 20면 내외로 하며, 초록은 100-200단어로 작성한다.

⑤ 기타 내용은 최신 APA 방식의 참고 문헌 표시에 준한다.

제 8 조(저작권)

-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대표저자는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제출하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제주대학교에 양도하여야 한다.
- ② 저작권 양도 동의서는 최종 수정본 제출시 온라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

제 9 조(논문게재료 및 심사료)

- ① 일반 논문은 편당 20만원, 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된 논문은 교내 연구비일 경우와 교외 연구비일 경우 각각 편당 30만원과 4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원고 분량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인쇄 면당 1만원을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최대 25면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별쇄본은 20부를 제공하며, 추가되는 별쇄본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쇄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칼라인쇄비는 실비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⑤ 게재 확정된 논문의 경우 편당 9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⑥ 학술지 발간에 관한 지원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게재료 및 심사료를 지급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원고 형식과 편집 용지)

① 원고 형식

| 구분               | 제목     | 본문  | 이름   | 장   | 절   | 인용문 | 각주  | 참고문헌 |
|------------------|--------|-----|------|-----|-----|-----|-----|------|
| 문<br>단<br>모<br>양 | 원쪽여백   | 0   | 0    | 0   | 0   | 3   | 3   | 0    |
|                  | 오른쪽 여백 | 0   | 0    | 0   | 0   | 3   | 0   | 0    |
|                  | 들여쓰기   | 0   | 2    | 0   | 0   | 2   | -3  | 0    |
|                  | 줄 간격   | 170 | 170  | 170 | 170 | 170 | 140 | 170  |
| 글<br>자<br>모<br>양 | 정렬방식   | 가운데 | 혼합   | 오른쪽 | 가운데 | 혼합  | 혼합  | 혼합   |
|                  | 글꼴     | 신명  | 신명   | 신명  | 신명  | 신명  | 신명  | 신명   |
|                  | 크기     | 18  | 10.5 | 13  | 15  | 12  | 9   | 10.5 |
|                  | 장평     | 95  | 95   | 95  | 95  | 95  | 95  | 95   |
|                  | 자간     | -5  | -5   | -5  | -5  | -5  | -5  | -5   |

② 편집 용지와 여백

가. 편집 용지: A4 배국판 210×297, 일단 구성

나. 편집 여백

| 위  | 아래 | 왼쪽 | 오른쪽 | 머리말 |
|----|----|----|-----|-----|
| 18 | 25 | 25 | 25  | 12  |

부칙

1.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논문 투고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교육과학연구(구 「교육과학연구 백록논총」) 연구윤리 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교육과학연구(구 교육과학연구 백록논총)에 게재되는 논문의 진실성과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책임저자와 공저자의 연구윤리)

- ① 「교육과학연구」에 논문을 게재하는 모든 저자는 의도로 연구내용과 결과를 위조, 변조, 누락, 추가해서는 안된다.
- ② 「교육과학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제 3 조(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소 소장, 운영위원, 간사, 편집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 ⑤ 연구윤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심의·의결 업무를 초등윤리위원회와 중등윤리위원회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초등윤리위원회의 소장은 초등교육연구소장이, 중등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연구소장이 맡는다.

## 제 4 조(연구부정행위의 판정)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교육과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내용·결과의 위조, 변조, 누락, 추가와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를 판정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통보한다.

## 제 5 조(소명기회 보장)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연구부정행위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다.

## 제 6 조(이의제기 보장과 논문의 철회)

-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한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한 결과를 이의제기를 모든 저자에게 통보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은 「교육과학연구」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학술지와 홈페이지

지에 공고한다.

- ④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제 7 조(비밀유지 의무)**

- ① 위원은 심의과정에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고,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제 8 조(기타)**

-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제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과 제주대학교 교육 과학연구소 연구윤리지침 및 초등교육연구소 연구윤리 지침을 적용한다.

**제 9 조(시행일자)**

- ①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